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행정제재처분 승계 및 교습비 초과징수 과징금 부과〉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141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준병 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7. 24.
3. 회부연월일 : 2026. 7.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설립자의 인적사항과 교습과정, 교습비등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교육감에게 등록한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원이 정해진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해당 학원이 행정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제재를 받은 학원을 폐원한 뒤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대표자의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여 학원을 새로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학원의 설립·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처분 효과의 승계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공정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학원의 양도·합병 또는 폐업 등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승계 근거를 마련하고, 교습비등을 초과 징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7조의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u> ① 학원설립·운영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학원설립·운영자가 학원을 폐업한 후에 종전의 학원설립·운영자,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

<신 설>

(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같은 장소에서 종전에 폐업한 학원과 같은 종류의 학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학원설립·운영자에게 한 제17조제1항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학원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2(과징금) ① 교육감은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초과한 금액을 징수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2. 검토의견

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 현행법은 학원설립·운영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교육감이 학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후 폐원·명의변경 등을 통하여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기간 또는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원신고¹⁾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 말소 또는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학원 설립·운영을 제한²⁾하고, 해당 학원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의 학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등록을 제한³⁾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④ 학원설립·운영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1항에 따른 폐원신고를 할 수 없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6의2.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말소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습정지처분의 정지 기간 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

다만, 학원의 영업이 양도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종전 학원설립·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 개정안은 학원의 양도·합병 또는 폐업 후 친족 등의 재등록 등에 따른 행정제재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도를 도입⁴⁾하려는 것으로,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임.

(1) 영업양도 등에 따른 처분의 승계

- 먼저, 안 제17조의2제1항은 학원의 영업이 양도되거나 법인이 합병된 경우 종전 학원설립·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하고, 행정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해당 절차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영업의 양도·합병을 통하여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다른 법률에서도 영업의 양도·합병 등에 따라

4) 현행법 제17조는 제1항에서 학원에 대한 등록말소·교습정지를, 제2항에서 교습소에 대한 폐지·교습정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 중 제1항에 따른 학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만을 승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을 교습하는 형태로, 학원과 달리 법인 운영이나 영업의 양도·합병에 따른 운영주체의 변경을 예정하기 어려운 등 운영구조에 차이가 있음.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입법례가 다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과 같이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⁵⁾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은 영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를 전제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영유아보육법」⁶⁾ 등은 별도의 지위승계 규정 없이도 시설의 양도·합병 등이 있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등에게 직접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행정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한 유사 입법례⁷⁾를 살펴보면, 양수인 등이 종전 영업자에 대한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27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한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3(행정제재처분효과 승계) ①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어린이집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행정처분일부터 1년간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양수 또는 합병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영업의 양수나 법인의 합병 등으로 지위 승계를 받을 때에 선의의 승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제재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법제기준과 실제, 2024)

명하는 경우에 승계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사례가 다수 있음.

그런데 안 제1항은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승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안 제2항은 친족등이 이를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승계의 예외에 관한 입증책임을 서로 다르게 정함.

- 따라서 유사 입법례 및 각 항 간 규정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안 제1항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부칙 제2조⁸⁾는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승계를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개정안이 종전 학원설립·운영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양수인 등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규정인 점을 고려하여,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새로이 승계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

8) 제2조(행정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가 행하여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친족 등에 대한 처분효과의 승계

- 한편, 안 제2항은 학원을 폐업한 후 종전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그 친족등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종전 학원설립·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및 진행 중인 행정제재 절차를 승계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원 및 재등록 등을 통한 행정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과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의 학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에 더하여 폐업 후 종전 학원설립·운영자 또는 그 친족등이 같은 장소에서 다시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종전 학원설립·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까지 승계하도록 하여 제재 회피 방지수단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임.

입법례를 보면, 이와 관련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⁹⁾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영업자가 폐업한

9) 제32조의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②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을 폐업한 후에 종전의 체육시설업자,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같은 장소에서 종전에 폐업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을 할 때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에게 한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 종전 영업자나 그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경우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일정 기간 승계하도록 하는 입법례가 있음.

- 다만, 영업의 양도·양수와 달리 폐업 후 친족등이 새로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전 영업자와 새로운 영업자 간의 관계가 반드시 영업의 승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음.

제재 회피 방지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행정제재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자의 책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위반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친족등에게 친족관계와 동일 장소에서의 학원 운영만을 이유로 종전 학원설립·운영자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특히 현행법에서도 폐원·재등록을 통한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재 회피 방지라는 입법목적과 친족등에게 부과되는 불이익 간의 비례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이러한 행정제재처분 승계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그 적용 범위는 적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학원의 종류는 학교 교과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크게 구분되고, 각 종류별 교습과정은 대통령령으로 세분되어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친족등이 종전 학원과 “같은 종류의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를 모두 승계 대상으로 할 경우, 종전 학원과 교습과정
이 다른 학원까지 승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교습과정에 관하여는
참고자료 참조).

특히 현행법 제6조제6항에서도 행정제재처분 후 동일 장소에서의 등
록제한 대상을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으로 규정하고 있
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의 “같은 종류의 학원”의 범위를 “동일한
교습과정” 등을 기준으로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나.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

- ☐ 현행법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육감
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

이를 위반한 경우 교육감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
여 교습정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교습비등 초과징수에 관한 제재 >

대상	현행 제재
학원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 교습정지 가능 (제17조제1항제7호)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 교습정지 가능 (제17조제2항제3호)
개인과외교습자	1년 이내 과외교습 중지 가능 (제17조제3항제3호)
공통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제23조제1항제7호의2)

□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4월 3일까지 학원·교습소 15,92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94건의 위반 사항¹⁰⁾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교습비 관련 위반은 596건으로 나타남. 또한, 불법사교육 집중신고 206건 중 교습비등 초과징수 신고는 89건으로 나타남.

□ 개정안은 현행 제재에 더하여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자에게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초과징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교습비등의 초과징수는 학습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행위이고, 최근 교습비 관련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징금을 도입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10)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6.4.)

□ 다만, 개정안은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익이 초과하여 징수한 금액을 의미하는지, 초과징수와 관련하여 얻은 전체 수익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과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만큼, “초과하여 징수한 금액” 등으로 그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¹¹⁾은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한 경우 실제 거래가격에서 최고가격을 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¹²⁾은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입법례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은 과징금의 부과 여부는 교육감의 재량으로 하면서도

11)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과징금)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실제로 거래한 가격·임대료 또는 요금에서 최고가격을 뺀 금액으로 한다.

1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을 위반한 횟수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횟수는 합산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0. 13.,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통관단계의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입 신고 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수입 신고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을 말한다.

그 금액은 위반행위로 얻은 수익의 “2배”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과징수의 금액·기간·횟수 등 위반행위의 정도가 다양할 수 있고, 다른 입법례에서도 일정한 배수를 과징금의 상한으로 정하여 구체적인 부과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징금의 부과한도를 “○배 이하”로 정하고 구체적인 부과금액은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습비등의 초과징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행정제재처분 승계의 예외요건과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국학원총연합회는 친족에 대한 제재 승계는 제재 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정상적인 사업 승계에 대한 예외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과징금은 위반의 고의성·반복성·규모 등에 따라 부과 수준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193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2. 18.>

학원의 교습과정(제3조의3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 습 과 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 (정보교과,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 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 용 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 발, 농업,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 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숙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 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 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 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 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 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 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 자연	인문사회·자연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 (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 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 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